

등록번호	미룡초등학교-
등록일자	2020. 12. 29.
결재일자	2020. 12. 29.
공개여부	공개

위원장	학교장
조**	이**

## 미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

<b>회의명</b>	2020학년도 제4회 미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(임시회)
<b>회의일시 및 장소</b>	2020. 12. 29. 11:00 ~ 11:40 학교운영위원회회의실(1층 미술실)
<b>참석자명단</b>	출석위원: 부위원장 이예경, 학부모위원 고영옥, 손미숙, 교원위원 학교장 이경아, 조찬백, 이창미, 김미연 (제적위원 10명 중 7명 참석) ※위원장 불참으로 부위원장이 안전심의 회의 진행.
<b>회의진행순서</b>	1. 개회 및 국민의례 2. 학교장인사 3. 운영위원장 개의 선언 4. 안전상정 5. 제안설명-질의답변 및 토의 6. 기타안전협의 7. 폐회
<b>상정안건</b>	[2020-25] 2020학년도 교내 겨울방학 영어캠프 계획(안) [2020-26]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(안) [2020-27] 2020학년도 학교회계 세입·세출 제4차 추가경정예산 심의(안)
<b>심의결과</b>	<b>[2020-25] 2020학년도 교내 겨울방학 영어캠프 계획(안)</b> 가. 안전설명 ○ 교원위원(조찬백) - 본교5~6학년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2021.1.18.(월)~2021.1.22.(금) 5일간 본관 3층 6학년교실 및 영어학습실에서 겨울방학 영어캠프를 운영하며 강사는 본교 영어담당교사 및 순회원어민교사 임. 영어캠프내용은 계획안을 참고하여 설명함 나. 질의답변 및 토의 ○ 없음 다. 결정사항: 원안 가결(찬성 7표, 반대 0표) <b>[2020-26]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(안)</b> 가. 안전설명 ○ 교원위원(조찬백) -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기간은 2021.3.2.~2022.2.18.일까지이며 과목은 2020학년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미운영시기가 길었던 점과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2021학년도에도 동일한 과목으로 개설하기로 함(컴퓨터, 영어, 수학, 바이올린, 미술, 로봇과학, 주산) - 강사모집에 대하여는 2020학년도 프로그램 강사별 만족도 조사결과 전원 80점 이상이며, 80점이상인 경우 동일프로그램에 한하여 2년 미만으로 재계약이 가능하며, 강사 중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시에 별도 강사모집 예정임 - 수강료는 전액 수익자부담이며 학생당 월32,000원으로 교재 및 재료비는 별도임. ※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자는 1인당 연간 60만원 지원하며 적극적 참여자에게는 최대 80만원까지 지원 됨) - 기타 개인위탁강사 모집절차 및 강사선정심사계획, 회계관리, 학생안전지도, 천재지변 및 감염병 확산등 재난사항 발생에 대한 대비계획등에 대하여 심의자료를 보며 설명함

나. 질의답변 및 토의

- 없음

다. 결정사항: 원안 가결(찬성 7표, 반대 0표)

**[2020-27] 2020학년도 미룡초등학교회계 세입·세출 제4차 추가경정 예산(안) 심의**

가. 안건설명

- 간사(김은안)
  - 기정예산액(3차추경) 580,648천원/ 경정예산액 582,994천원으로 총2,346천원 증액
  - 목적사업비 교부에 따른 예산반영 10건 총12,773천원
  - 수자부담경비 조정 3건 총10,455천원(방과후학교 강사비 및 교재비 삭감△11,272천원, 6학년 학생수 감소로 졸업앨범비 삭감 △160천원, 긴급돌봄학생 급식비 지원 977천원)
  - 자체수입(폐식용유 매각대금) 총28천원
  - 사업완료 및 추가사업에 따른 각 사업별 조정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설명함

나. 질의답변 및 토의

- 없음

다. 결정사항: 원안 가결(찬성 7표, 반대 0표)

**기타 사항 :**

2021학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예산 교육 실시 함

**폐회 선언**

위원장: 이상으로 2020학년도 제4회 미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

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. 폐회를 선포합니다. (의사봉 3타)

회의 종료 시간: 11 : 40

기록자: 간 사 김\*\* (서명)

확인자: 교원위원 이\*\* (서명)

※ 조례 제15조에 의거 회의 일시, 장소, 참석자, 안건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을 기록